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7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 임종득 • 유상범 • 김형동

주호영 • 유용원 • 엄태영

김상훈 · 천하람 · 김예지

김승수 · 김석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문제 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유통기한"을 각각 "유통기한,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한 비료는 제14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	①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	
에 정하여진 <u>유통기한</u> 등의 보	<u>유통기한,</u> 비료제조
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	<u>.</u>
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유통·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	
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	
여진 <u>유통기한</u> 등을 적은 보증	<u>유통기한, 비료제조에 사</u>
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	<u>용된 원료의 원산지</u>
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